

2009년 꿀벌 방역 사업

1. 사업개요(농림부 2008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2. 지원약품 종류

- 꿀벌 구제약품 지원(2종)-응애류·노제마병

- 1군당 기준액(약품비 산출단가) : 응애류 367원×3회=1,101원

노제마 514원×3회=1,542원

- 단가는 조달청과 제조(수입)업체간에 체결한 단가계약 금액 중 가급적 품목별 최고가 기준으로 산출

- 단, 품목 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꿀벌 응애류 구제 약품은 중간가 제품을 기준으로 산출(고가제품을 구입할 경우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 구제약품 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0.8%)는 국비에서 부담

3. 2009년 노제마/응애류 구제 현황

- 기 준 : 농림부 2008년 12월 기타가축 통계조사(꿀벌)

- 방역비

- 노제마 : 1,296,000천원(국비), 554,400천원(지방비) → 1,850,400천원

- 응애류 : 925,200천원(국비), 396,000천원(지방비) → 1,321,200천원

4. 사업물량 배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추진체계

<구제약품>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 및 시·군 분회와 협의 하여 약제선정 및 배정방법을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구제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군의 지방비 부담 확인
- 시·도(시·군)는 사업계획에 의거 구제약품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구입) 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5. 세부사업 시행요령

○ 꿀벌 응애류

(단위: 천군,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22	16,962	7,260	24,222	○ 실시대상 - 개량 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3회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542원 (514원×3회) - 국 비 : 1,080원, 70% - 지방비 : 462원, 3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 노제마병 감염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조기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부산	17	13,107	5,610	18,717	
대구	32	24,672	10,560	35,232	
인천	10	7,710	3,300	11,010	
광주	25	19,275	8,250	27,525	
대전	17	13,107	5,610	18,717	
울산	20	15,420	6,600	22,020	
경기	84	64,764	27,720	92,484	
강원	84	64,764	27,720	92,484	
충북	120	92,520	39,600	132,120	
충남	134	103,314	44,220	147,534	
전북	85	65,535	28,050	93,585	
전남	114	87,894	37,620	125,514	
경북	287	221,277	94,710	315,987	
경남	105	80,955	34,650	115,605	
제주	44	33,924	14,520	48,444	
계	1,200	925,200	396,000	1,321,200	

○ 꿀벌 노제마병

(단위: 천군,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서울	22	23,760	10,164	33,924	○ 실시대상 - 개량 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3회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542원 (514원×3회) - 국 비 : 1,080원, 70% - 지방비 : 462원, 3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 노제마병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조기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부산	17	18,360	7,854	26,214	
대구	32	34,560	14,784	49,344	
인천	10	10,800	4,620	15,420	
광주	25	27,000	11,550	38,550	
대전	17	18,360	7,854	26,214	
울산	20	21,600	9,240	30,840	
경기	84	90,720	38,808	129,528	
강원	84	90,720	38,808	129,528	
충북	120	129,600	55,440	185,040	
충남	134	144,720	61,908	206,628	
전북	85	91,800	39,270	131,070	
전남	114	123,120	52,668	175,788	
경북	287	309,960	132,594	442,554	
경남	105	113,400	48,510	161,910	
제주	44	47,520	20,328	67,848	
계	1,200	1,296,000	554,400	1,850,400	